

예 산 총 칙

제 1 조 2009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 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총 계	3,363,142,000	100,894,260
일 반 회 계	2,950,700,000	88,521,000
특 별 회 계	412,442,000	12,373,260
공기업특별회계(지역개발기금)	211,520,000	6,345,600
기 타 특 별 회 계	200,922,000	6,027,660
· 강 원 도 립 대 학 운 영	8,777,000	263,310
· 의 료 급 여 기 금 운 영	176,050,000	5,281,500
· 학 교 용 지 부 담 금	16,095,000	482,850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 과 같다.

제 3 조 (채무부담행위사업) : "해당없음"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5 조 (명시이월사업) : "해당없음"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2,640,684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20,0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